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실업 보험, 이전가격, 조세와 세금검사,사찰의 확인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 규제에 대한 업데이트

2015年 10月 2日

목차

내용	페이지
실업보험	3
가격 이전 과 법인세 • 협력연결 측과같이 거래에 참가할때 세금의 리스크 • 법인세 결산서에 기간대응할부(Accrual) 항목들의 조정	4
법인세 • 베트남에 집임대료를 개인대신으로 회사에의해 지급해준 경우에 과세소득 계산 공식 • 베트남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계약공사회사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	5
부가가치세 • 세관 외창고(보세창고)에 상품 소유권 양도를 할때 VAT 세율 • 외국 모회사를 대신한 대표사무실의 은행 계정을 사용해서 결재할때의 리스크	6
세무 검사, 사찰 • 납세자의 본사에 건의 가능성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규제	7
Grant Thornton Vietnam 과 같이 연락	9

실업 보험

2015년 07월 31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실업보험에 대한 근무법의 일부조항 시행 안내를 위한 문서 No. 28/2015/TT-BLĐTBXH를 발표한다.

문서 No. 28/2015/TT-BLĐTBXH의 효력은 2015년 09월 15일 부터이고 위 문서에 규정된 각 제도들이 2015년 01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본 문서에 주목 필요한 일부 내용 다음 :

실업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

- 근로 계약서의 효력날부터 30일내 사회보험 조직에 근로자의 실업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해준다.
- 노동 고용자가 2015년 01월 01일전에 노동자와 0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에 계절근무 혹은 일정한 업무 진행의계약을하면서 그계약을 진행하는중 경우, 2015년 01월 01일 까지 상기의 노동계약기간이 최소 03개월이상 남으면 고용자는 2015년 10월 01일 이후부터 노동 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가입해주어야한다.

실업 보험료의 기준

- 노동자는 실업보험료를 노동 고용자가 결정한 봉급제도에 따라 입금하고 노동자의 그 월급이 지역 최저월급보다 20번 높으면 노동자와 고용자는 실업보험료를 최저월급의 20개월에 해당한 기준으로 201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입금해야한다.

실업 지원금의 수혜

- **매월 실업 지원금의 수혜 기준**은 = 실업하기전 실업보험료를 입금하는 계근 06개월의 평균월급 X 60%.

문서 No.28/2015/TT-BLĐTBXH의 내용은 실업보험 가입 보류에 대한 규정은 다음 경우에 적용 :

- 실업보험 지원결정서를 받아오지 않는 노동자인 경우.
- 노동자는 실업 지원금을 받아오지 않는 경우:
- 기숙의 개월들이 있어 실업보험지원금을 해결되지 않는 노동자인 경우:
- 노동자가 실업보험지원을 수혜중 사회 보험조직의 결정으로 수혜 중지 로 처리된 경우: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노동자가 규정대로 실업보험 보류를 받으면 보류 수속의 진행 책임을 져야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한다.

정기적 통보 수속과 양식들 은 다음:

- 본 문서는 실업보험에 대한 수속 진행시 노동자, 노동 고용자들이 적용해야 할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노동 고용자는 본 문서와 삽입된 양식 No28 처럼 2015년 01월 01일 까지 고용된 근로자 숫자를 본사 부지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 센터에 상기 시점부터 30일내 통보해주야 한다.
- 매월 03일날전에 본 문서에 삽입된 양식 29번 처럼 본사 부지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 센터에 자기회사에 노동자 변동이 있으면 (통보시점 전에 양력 계근 월에 따라 계산) 을 통보해주야 한다.
- 노동고용자는 50명의 노동자이상을 감원하면 본사 부지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 센터에 당장 토보해서 제시시간내에 자문 및 협조를 받게된다

가격 이전 과 법인세

협력사업처와 거래할때 세무 리스크:

국세청은 문서 No.3185/TCT-CS 의 2015년 08월 10일 에 협력연결 사업측들 사이 VAT에 관련된 안내를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불량상품 때문에 고객한테 할인 판매해준 경우에 적용한다. 그에 근거하면 다음:

-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엔 상품관련된 계약, 세관 신고서, 영수증, 은행결재 증빙 등이 있으면 VAT 세율0%로 적용된다.
- 상품수출회사가 외국회사와 연결협력관계있는 경우에 외국의 제 3측이 확인한 납품물건의 불량 List, 상품의 단가 할인확인서들이 있으면 상품수출회사는 오직 실제수금/계약금 (할인-감가하기전) 의 % 비율로 상응된 Input VAT 공제만으로 받는다.
- 한편 에 그 수출 회사는 전면적 사찰대상으로 되고 법인소득세 결산 과 재무부의 문서 No. 66/2010/TT-BTC의 시장가격확인에 근거해서 단가검토를 받게된다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은 고객님들이 협력 연결측하고 영업 거래가 있을 때 매년 연결거래 정보 신고 에 충분히 반영하고 거래 항목 의 시장가격 증명 서류 들을 가지면서 세무서의 전면적 사찰요구 발생시에 관련측들사이의 거래상 시장 가격을 증명해줄수 있다고 권고하고싶다 .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고객님한테 제출된 협력연결거래 정보 신고에 반영한 정보 및 시장단가확인에 관련된서류의 재검토를 재무부의 문서 No. 66/2010/TT-BTC의 규정집행과 맞게 항상 협조 해드린다.

법인세 결산 신고서에 각종 기간대응할부(Accrual) 항목들의 조정

Hung Yên성 세무서는 문서 No. 2184/CT-TTHT의 2015년 07월 31일 에 발표해서 335 계정에 기록된 기간대응할부의 각 항목에 대한 세무 처리 안내 를 해준다. 그에 근거하면 다음 같다 :

- 회사는 현행 제도에 따른 335계정에 반영된 각종 기간대응할부금에 대한 법인세전에 이익의 증/감을 조정한다.

문서 No. 2184/CT-TTHT 를 Hung Yên성 세무서에서 발표했고 다른 지방의 세무서인 Hà Nội, Hải Phòng, Vĩnh Phúc, Hồ Chí Minh, Đồng Nai, Bình Dương...등은 비슷한 안내를 낼수있고 혹은 납세자의 335계정에 각종 기간대응할부금 (Accrual)에 대한 매구체적 경우 마다 안내해 준다. 때문에, Grant Thornton Viet Nam(주)가 고객님에게 매년 법인소득세 결재 신고서에 반영한 정보 의 재검토를 해서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들을 정확하고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싶다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은 늘 고객님들에게 요구가 있으시면 조세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전부 검토해드릴수가 있다.



법인세

베트남에 집임대료는 개인을 대신한 회사의 지급경우에 대한 과세 소득 계산 공식

국세청의 문서 No. 3171/TCT-TNCN의 2015년 08월 07일 에 발표해서 외국인을 위한 집임대료 에 관련된 개인소득세 정책을 안내해준다. 본 문서는 전에 발표한 문서 No. 1348/TCT-TNCN의 2015년 04월 13일 에 안내의 내용들을 재 확정한다.

국세청은 상세히 다음 안내를 한다:

- 일본모회사의 파견을 받아 인본인 개인으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일하는 경우, (그 개인이 오직 베트남에만 근무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부터 소득을 받다).
- 베트남의 자회사가 근무자를 대신으로 집임대료를 지급해주면 자회사의 대신 지급금항목을 실지급금에 따라 과세소득에 계산 되지만 일본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에 지급해준 금 (집임대료 제외) 의 과세 총소득 의 15% 초과할수 없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고객님의 외국 인 노동자들의 개인 소득세의 계산 표를 다시 검토해준 권고를 하고 싶다.



외국 공사 계약측은 베트남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 인원들의 개인소득세 의 신고 의무

문서 No. 1105/CT-TT&HT의 Hải Phòng 성 세무서에서 2015년 08월 05일에 발급에의하면 :

외국 공사계약회사를 사용하는 회사의 통보 의무 :

- 회사는 외국공사계약자를 요구해서 외국근로자의 정보공급을 받아 그 외국근로자가 베트남에 일하기시작된 7일내 지방 세무세에 제출 해준다.

외국 공사계약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 :

- 외국공사계약자는 외국근로자 (성함,국적,근무기간, 담당업무, 소득)의 정보를 소속회사에 공급해준 의무가 있다.

외국 공사계약회사 인원의 의무 :

- 외국개인은 외국 공사계약자의 파견으로 베트남에와 근무하면서 베트남에 소득이 발생해서(베트남이나 외국엔 구불없이) 회사하고 노동계약이 없고 봉급도 받지 않으면 스스로 개인소득세 계산, 신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고객님의게 다음 주의를 권고한다. 즉, 문서 No. 1105/CT-TT&HT 가 Hải Phòng성 세무서의 발급으로 됐지만 다른 세무서에도 외국계약자의 인원들의 세무신고 와 외국공사회사를 사용하는회사의 통보 의무를 비슷된 안내문서가 있는 요구이다.

또한 , 어떤 지방세무서가는 외국공사측을 사용하는 회사 를 요구해서 외국공사측이 규정대로 통보의무를 충분 집해치않는이유로 베트남에 세무 신고하지 않는 외국공사측의 외국인원의 각종 개인소득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준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세관 외창고 (IDC)에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 진행시 VAT의 세율
Hà Nội성 세무서는 문서 No. 45107/CT-HTr의 2015년 07월
10일에 납세자의 구체적 경우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다음 :

외국(일본)에서 원료,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인경우에 세관외
창고 (IDC- Tiên Sơn, Bắc Ninh)에 입고한 수속을 진행하고
,그후엔 그 보세창고의 소유권을 베트남 구매자한테
양도해주면 다음 적용 :

- 구매자가 베트남 회사가아니고 (비세관구역의 회사
아님)혹은 비세관구역의회사이면 보세창고의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할때 VAT 부담없는 대상자들에 다 속한다.
- VAT영수증을 작성할때 판매회사는 오직 판매가의 란에
결재가로 쓰고 VAT 세율과 VAT란에 줄글면된다.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고객님들이 세관 외창고의
상품을 구, 판매할때 VAT세율을 주의하시고 그외엔 그
보세창고의 물건 구매 의 결재 시 에 계약자의세무 의무가
발생할수 있다는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외국 모회사를 대신으로 대표사무실의 은행 계정을 사요해서
결재 해준 리스크

국세청의은 문서 No. 3184/TCT-CS 의 2015 년 08월 07일에
발표해서 대표사무실의 활동과 은행계정 개선에 대한 안내를
한다.

- 대표사무실은 베남에 합법활동된 은행에 외화거래 계정 과
VND으로 거래 계정을 개선하게 되고 그계정들을 자기
대표사무실의 활동에만 사용한다.
- 국세청의 생각으로 대표사무실은 외국 모회사한테 대신으로
결재할수가 없다.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고객님들이 세무Control을
하기위한 은행통해서 결재/ 현금사용치않는 결재 들의 방식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세무 검사, 사찰

납세자의 본사에 Complain가능성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규제

국세청은 문서 No.1276/QĐ-TCT를 발표해서 납세자의 본사에 건의 가능성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규제를 반영한다. 본규제는 2015년 07월 16일 부터 발효한다.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위 규제의 일부 중요문제를 요약해서 세무서들이 납세자의 본사에 세무검사, 사찰 활동을 강화하는 배경하에 고객님들이 알고 적용할수 있게 해준다. 다음 :

규제를 발급할때 국세청의 관점 :

- 세무 검사, 사찰 단들이 세법규정을 정확히 처리 하지 않아서 납세자한테 어렵고 귀찮는 일을 만들어준 것을 제한한 목적이다.
- 위 규제는 세무 행정 결정의 Complain을 내는 납세자의 합법 권한에 대한 영향을 주지않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이해 차이가 있는 문제점들이 납세자의 Complain제기 하기전에 각급 세무 기관들의 미리 합의, 통일을 했기 때문에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와 조세에 대한 처리 결정서를 서명후에 납세자의 Complain을 제한할수가 있다.

Complain 가능성이 있는 일부 경우 :

1. 법규 문서들에 규정되지 않 지만 검사, 사찰단이 그냥 처리한다.
2. 납세자의 법규문서의이해 방식은 법규문서의 규정에 비해 적합 하지 않다.
3. 법규 문서들이 비슷된 법적 효력이 있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규정을 한다.
4. 세무서가 Samples를 보내서 검색요구를 했지만 관련기관의 대답이 아직 없다.
5. 관련 기관(국가 사찰 기관,국가 감사.등.)의 건의에 따라 진행된 검사, 사찰업무를 하지만 납세자가 위 기관들이 처리 건의 법규 근거내용 에 대한 통일을 찾지못했다.
6. 납세자의 의견을 보류한다.
7. 납세자는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지 않고 조세관련처리, 세무서의 행정위반 결정을 집행하지 않다.
8. 세금 지정에는 세무서와 납세자사이 의견 차이가 아직 있다.
9. 납세자는 유권 기관들의 회답을 주는 제기문서가(검사, 사찰 결정서 발급하는 시점전에) 있고 집행근거로 된 답변 문서를 아직 받지못 한다.
10. 기타 경우들에 납세자는 검사, 사찰 단장님의 평가에 대한 Complain 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똑 같은 문제점내용인데 검사, 사찰의 2 업 무단이 2년도에 서로 다르게 처리한다.

세무 검사, 사찰 (계속)

납세자의 본사에 Complain가능성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규제

처리원칙, 순서, 해결 수속에 대한 일부 주의점 :

1. 검사, 사찰을 통해서 Complain가능성있는 경우엔 처리업무는 다음 원칙으로 한다 :
 - 법규 문서들의 규정과 본 규제의 내용의 규정 순서를 정확히 따라 한다.
 - 진행을 아래 급부터 위급까지의 순서로 진행한다.
 - 해결급 초과 (Over)의 문서를 해결 하지 않다.
 - 검사, 사찰업무를 납세자의 본사에 검사, 사찰법, 조세관리법, 검사, 사찰 규정과 시행안내 각문서들에 따라 진행한다.
2. Data검사의 확인서를 같이 서명하는 경우엔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처리와 아직 일치하지않으면 의견Complain의 문제점 부분에 내용 명기 필요하고 (통일된 내용, 문제점내용, 처리근거와 납세자의 의견을 정확히 기록한다) 각서류, data확인서에 걸린 문제점내용에 관련 된 서류들을 충분히 모집한다.
3. 검사, 사찰 과정에 문제점 있는 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각급 지도자의 의견지시를 기다리는 동안의 경우 :

검사, 사찰의 연기결정을 내준 필요가 없는경우에 검사, 사찰 기한이 끝나면 조세 검사, 사찰 규정의 규정시간내에 단장님이 확인서를 **지시 의견을 기다리는 문제점의 확인서부분에 따로 항목으로 명기 하고 검사, 사찰의 결과와 분리한다.** 상급의 답변 문서가 있는 후 늦어도 업무 5일 내 검사, 사찰단이 납세자와 같이 확인서를 계속 법규에 따라 처리로 작성한다.

4. 검사, 사찰 확인서를 공개 발표하는날 부터 늦어도 5일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지않는 납세자는** 행정위반 패널티를 받을수 있다 .

고객님들은 자기 본사에 세무서가 정식적 세무 검사, 사찰결정을 내놓 기전에 각종 계약서, 영수증, 증빙, 세무 신고서 및 조세의무 증명을 해 주는 서류들을 검토해준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의 조세 전문가 들의 서비스 의 협조를 받드신 요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해 주세요 .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항상 고객님에게 협조를 드리면서 세무 검사, 사찰단계에 귀회사의 조세의무를 세무서와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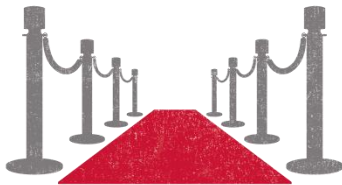
연락처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고개님들에게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 한다.
(주)Grant Thornton (VietNam) 은 윗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 하는 과정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지지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주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 받으려면 저희들의 전문가들과하고 연락 및 합의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상기의 소식통내용등 download 를 하시려면 당사의 다음 Web에 검색하 시면 됩니다:

www.gt.com.vn



Ha Noi 사무실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àng Khô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ễn Đì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ạm Vinh

Hàn Quốc 고갯사 지원
D 0913 02 4204
E 50vinhngocpham@gmail.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ạm Ngọc Long

Tax Director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Nguyễn Nhật Lệ

Senior Tax Manager
D +84 4 3850 1685
E Le.Nguyen@vn.gt.com

Văn phò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사무실

Tầng 28, Tòa nhà Saigon Trade Centre
37 Tôn Đức Thắng
Quận 1, Tp. Hồ Chí Minh
Việt Nam
ĐT + 84 8 3910 9100
F + 84 8 3914 3748

Nguyễn Hùng Du

Partner Tư vấn thuế
M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M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ần Hồng Mỹ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Giám đốc - Khách hàng Nhật Bản
M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ần Nguyễn Mộng Vân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M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ễn Bảo Thái

Trưởng phòng cấp cao Tư vấn Thuế
M +84 8 3910 9236
E Thai.Nguyen@vn.gt.com



Questions & feedback

